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의 건강 내담을 위한 정책
보다 나은 식약처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2022 Ver. 01
(2022. 03.)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안내서는 민원인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민원인을 위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2년 3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6219

팩스번호 : 043-719-6200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CONTENTS

01

해외제조업소 등록



- 1 해외제조업소 _ 5
- 2 해외제조업소 등록 _ 5
- 3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_ 6
- 4 해외제조업소 등록방법 _ 7
- 5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_ 13
- 6 해외제조업소 등록취소 주요 사유 _ 14

02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FAQ 및 당부사항



- 1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FAQ _ 16
- 2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당부사항 _ 23

01

해외제조업소
등록

1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포함)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2 해외제조업소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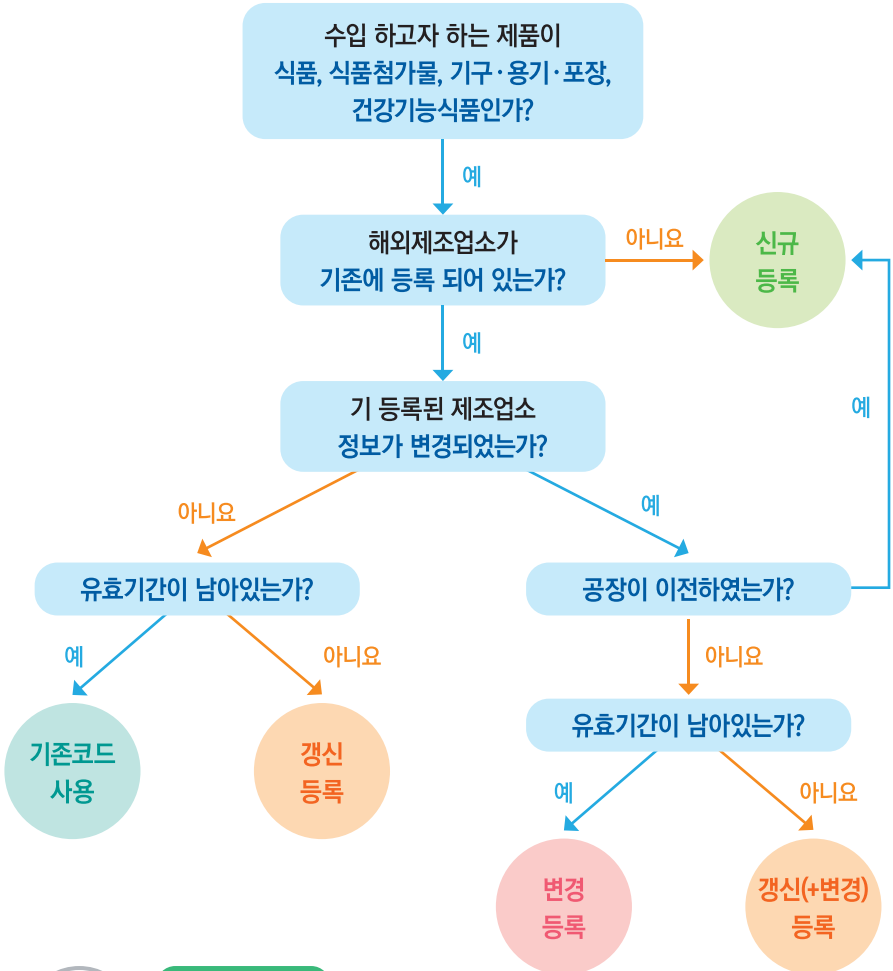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시행규칙 제2조

3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작업장 등록



수입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대상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한 해외작업장** 등록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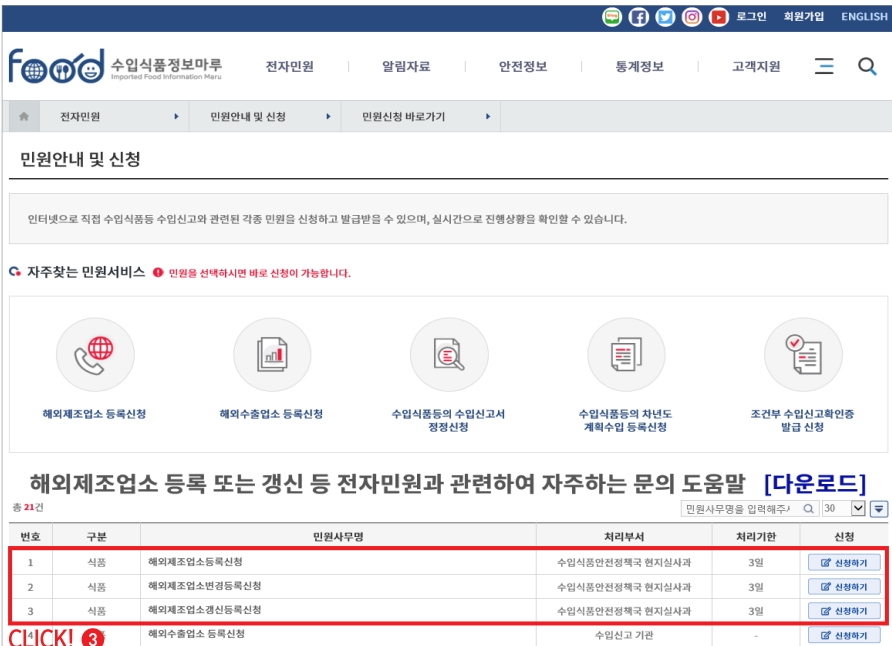
4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1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 접속(https://impfood.mfd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① [전자민원] ▶ ② [민원신청 바로가기] ▶ ③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CLICK! ③

2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중복확인]

업소 정보

*는 필수입력

중복확인

업소명 *		등록코드	
소재지 *			
국가 *		지역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FAX번호	

- 업소명 : 식품 제조·가공 공장 정보(수출업소, 판매처 제외)

- 농·임·수산물 : '포장' 또는 '보관'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 정보

- 대표자 : 해외제조업소(공장) 시설의 책임자

- 신규등록의 경우 [해외제조업소명], [소재지], [국가] 입력 후 검색 ▶ 중복으로 등록된 사항이 없다면, 등록신청정보의 돋보기(지역) 클릭 ▶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 지역 선택
-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 '업소조회'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기존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오니, 변경사항만 지우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 * 공장 소재지 이전의 경우 신규 등록 대상임
-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입력

3 [식품 정보], [영업 정보] 입력

식품 정보

*는 필수입력

중복확인

생산품목* CLICK! 1

(복수선택가능)

농산물 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수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상세 품목* (해당 제조업소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상세품목 선택)

+ 품목추가

*는 필수입력

품목코드	품목명(한글명)	품목명(영문명)	삭제
상세 품목을 추가해주세요.			

- 가공식품 : (예:죽석식품류, 주류 등)

- 기구·용기·포장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예: 주걱, 텀블러)

- 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국가간 약정에 따른 수산물은 제외

- 수입하고자 하는 생식품목에 해당하는 [상세 품목] 입력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 상세 품목의 세부 유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참조
- 농·수산물의 경우 처리 형태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구분 등록* 진행
 - * [농산물] 농장, 농장혼합시설(농장+단순 가공시설), 집하장
[수산물] 수산물 제조·가공, 선박, 양식장
- 관리시스템(HACCP, ISO22000 등) 여부 선택 ▶ 세부 내용 입력

영입 정보

* 필수입력 CLICK! ①

영입의 종류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가구, 용기·포장 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농산물 포장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제조·가공(선박 및 양식 포함)	
관리시스템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적용안함 <input type="radio"/> 적용	
관리시스템	HACCP <input type="checkbox"/> ISO 22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text"/>	
인증기관의 인증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인증명	인증기관	<input type="text"/>
인증일	만료일	<input type="text"/>

CLICK! ②

- 관리시스템: 안전한 식품 제조·생산을 위한 관리 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임
 ※ 참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입력하신 인증 정보는 실제 수입신고 시 표시여부와는 관련 없음

4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하단의 [동의사항 확인] 후 [신청] 클릭

* 식품 제조시설 등 입을 증빙하는 수출국 발행 인허가 서류

필수 첨부 파일

해외제조업소 공장 확인서류
 공장 확인서류: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등록·신고서류 등 (영문본)

+ 파일추가 CLICK! ①

▲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양식

첨부파일

첨부 허용 파일 확장자: pdf,hwp,jpg,png,xlsx,xls,txt,doc,ppt,docx

+ 파일추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 ✓ 상기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 ✓ 해외제조업소의 실시·운영자가 위의 등록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

CLICK! ②

5 민원처리 진행현황 및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s://impfood.mfds.go.kr)

▶ ① [전자민원] ▶ ② [민원진행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

신규등록

수입된 이력이 없는 해외제조업소를 새롭게 등록

☑ 주의사항

- 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소명과 소재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은 취소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3 등록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축산물일 경우, 해외제조업소가 아닌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5 수산물 약정시설의 경우 해당 국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1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추가 필요 서류 : 제조업소 공문[또는 각각의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 서류(영문본)]
- 공문 주요 내용 : A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공장에 대한 정보 포함

2 공장을 이전한 경우

- 추가 필요 서류 : 제조업소 공문,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의 취하요청서
- 공문 주요 내용 : 이전 전/후의 소재지, 이전 일자, (구)공장의 운영 여부

3 유사한 주소지에 여러 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 추가 필요 서류 : 제조업소 공문[또는 수출국 발행 공장 확인 서류(영문본)]
- 공문 주요 내용 : A사와 B사가 별개의 다른 회사임을 확인하는 정보 포함

4-2

변경등록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 주의사항

- 1 공장이 이전(위치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이 아닌 **신규등록 대상**입니다.
- 2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공장을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3 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가 수출업소(유통·무역회사 등) 정보로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아닌 **등록취소 대상**입니다(실적 연계 불가).
- 4 수산물 약정시설의 업소명,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1 업소명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해외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업소명 변경(인수합병 등),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업소명이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소재지 변경은 없음

2 소재지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해외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행정체계 변화,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A업소명의 소재지가 [변경 사유]에 의해 (가)에서 (나)로 변경되었음(공장 이전 등 직접적 소재지 이전 없음)
* 공장 이전 등 직접적 소재지 변경은 신규 등록 대상임

3 대표자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해외제조업소 공문 등 대표자 변경 확인 가능 서류
- 공문 주요 내용 :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소재지 변경은 없음

4-3

갱신등록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일 이전에 갱신필요

☑ 주의사항

- 1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1 업소명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해외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업소명 변경(인수합병 등),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업소명이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소재지 변경은 없음

2 소재지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해외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행정체계 변화,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A업소명의 소재지가 [변경 사유]에 의해 (가)에서 (나)로 변경 되었음(공장 이전 등 직접적 소재지 이전 없음)
* 공장 이전 등 직접적 소재지 변경은 신규 등록 대상임

3 대표자 변경

- 변경 확인 가능한 서류 : 해외제조업소 공문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 공문 주요 내용 :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소재지 변경은 없음



5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1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 접속 (<https://impfood.mfds.go.kr>)

- 1 [안전정보] ▶ 2 [업체조회] ▶ 3 [해외제조업소] 탭
- 해외제조업소 코드, 업소명, 소재지로 검색 가능

6

해외제조업소 등록취소 주요 사유



1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제 제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수산물은 선박을 포함)하는 시설이 아닌 수출회사(유통·무역회사 등 포함)로 확인된 경우
- 제조업소 폐업 및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해외제조업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시설이 아닌 경우 등)

3 제조업소 실사 결과 확인 사항에 따른 처리

- 확인사항 :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수출업소, 공장 소재지 이전(위치변경), 폐업으로 인한 미운영 등



02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FAQ 및 당부사항

1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FAQ



1-1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를 등록해야 하나요?

제품의 유통기한(제조일자) 설정 및 품질관리 등 최종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인 경우에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의 경우 최종 포장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하며, 포장장소는 그 형태에 따라 농장, 농장혼합시설(농장+단순가공시설), 집하장으로 구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입제품의 제조공장이 A제조업소와 B제조업소에서 제조공정을 나눠서 생산할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하나의 제품을 여러 업소에서 제조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하는 대상은 최종 제품의 포장에 완료되고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한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젓병 관련 수입하는 경우, 실제 젓병과 젓꼭지 부분을 제조·가공하는 회사가 각각 다를 경우에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 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A와 B에서 각각 완제품을 만들고 C에서 단순 포장을 진행한다거나 A와 B를 각각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고, 각각 완성된 제품을 C에서 최종 조립 및 세트 포장을 진행한다거나 C를 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병입장소가 매번 변경되는 와인의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주류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최종 병입하는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의 브랜드명(상표명)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병입장소가 매번 바뀌는 와인 제품의 경우,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제조업소 측 공문이 첨부되는 조건으로 원액을 제조·생산하는 시설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의뢰자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한 업소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할 경우 실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 B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생산품목(식품유형) 및 영업의 종류(농, 수산물 처리 형태)의 등록은 필수인가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부터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으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신고 전 생산품목 및 영업의 종류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기구·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 재질을 등록

또한, 해외제조업소 코드는 여러 수입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변경 또는 갱신 신청시 기존에 존재하는 생산품목은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허위 수입 신고에 해당되나?

타인이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위 수입신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1차)영업정지 10일, (2차)영업정지 20일, (3차)영업정지 1월

따라서 모든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을 통해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각 다른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세트포장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A사, B사에서 각각 제조한 제품을 C사에서 단순 합포장하여 최종 세트상품이 완성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제품이 제조되는 A사, B사 및 C사를 해외제조업소로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 : 과자 선물세트)

다만 A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B사에서 납품 받아 자신이 제조한 제품과 함께 최종 포장하여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라면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B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 : 라면(B사)+스프(A사)]

1-2

신규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 정부로부터 식품 생산 시설임을 증빙 받은 서류(영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출서류가 수출국 정부 언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경우 공증번역 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번역 공문(영문으로 작성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정보 포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 시,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HACCP, ISO22000 등)이 적용된 업소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승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 정부 발행 공장등록 서류에 본사 소재지만 명시되어 있는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본사 정보가 포함된 수출국 정부 발행 서류, 본사와 해당 공장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조업소 공문을 첨부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승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의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부터 관리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통해서 식품 등을 수입하더라도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는 누가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② 식품제조가공업(주류포함)
- ③ 식품첨가물제조업
- ④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⑤ 건강기능 식품벤처제조업
- ⑥ 용기/포장지제조업
- ⑦ 유통전문판매업(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등에 한함)

위 업종의 인허가 정보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세사 및 대행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이 불가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가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적인정은 안되나요?

해외제조업소가 소재지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이전에 대한 증빙서류(제조사 공문, 수출국 정부 발행 공장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신규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등록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코드가 새롭게 부여된 경우 이전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업체가 수출 후 반송한 제품의 수입신고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제품도 수입식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출한 국내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소 갱신 만료일이 지나면 갱신신청인가요? 신규등록 신청인가요?

갱신 신청 대상으로 만료일이 지나도 갱신은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내역과 이미 등록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건 / 민원 완료 건 진행상황’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신청번호를 누르시면 신청하셨던 상세내역과 등록코드, 반려사유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실사 동의는 의무사항인지요?

실사 동의는 의무사항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확인·체크하여야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1-3

변경·갱신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가능 품목을 가공식품으로 하였고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생산품목이 가공식품으로만 선택되어 있다면, 생산품목에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중복가능)하여 변경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신청을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후 2년이 경과하면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등록하신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갱신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최초등록 수입업체가 아닙니다. 다른 수입업체도 변경/갱신이 가능한가?

최초 등록한 수입업체가 아니더라도 변경등록, 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등록신청을 하려고 제조업소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변경등록신청과 갱신등록신청 두 번 해야 하나요?

갱신등록신청을 하시면서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대상(공장 이전 등 소재지 변경)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사의 업소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수출국 정부 발행 서류, 제조사 공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당부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신규 및 변경) 또는 갱신 시 HACCP, ISO 등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업소는 해당 정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수입신고 예방을 위해 수입식품 신고 전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미흡 등의 사유로 등록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외제조업소 등록(유효기간 만료시 갱신 포함)을 먼저 완료하신 후 제품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신규 및 변경) 또는 갱신업무에 대한 민원 상담은 식품안전정보원 (1811-6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관련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공직자 부패·공익 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패·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 신고” 코너



식품의약품안전처